

창원지방법원 2024. 11. 4 선고 2023가단12881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10. 7.

판 결 선 고 2024. 11. 4.

주 문

-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- 피고는 원고에게 50,494,4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(자백간주)

판사 확정언

별지